



제418회 국회 (정기회)
제4차 외교통일위원회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명칭 변경〉

■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(의안번호 제2201654)

2024. 11.

외 교 통 일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사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홍기원의원 등 14인
2. 발 의 일 : 2024. 7. 12.
3. 회 부 일 : 2024. 7. 1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, 직계 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.

그러나 “이탈”이라는 단어는 “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”이라는 의미로,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“북한이탈주민”을 대신하여 “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”이라는 의미의 “이북민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,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명 및 제2조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이 법의 제명 및 각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북한이탈주민” 용어를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“이북민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u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</u>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<u>북한이탈주민</u>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 2. “보호대상자”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<u>북한이탈주민</u>을 말한다. 3. 4. (생략) (이하 생략)	<u>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</u>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<u>이북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----- -----<u>이북민</u>----- -----. 3. 4. (현행과 같음) (이하 생략)

- 현행법 제2조제1호1)에 따르면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
북지역에서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“이탈”이라는 단어는 “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”이라는 의미로,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므로, 이러한 “이탈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.

□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명칭이 변경되어온 연혁을 살펴보면,

최초의 법적 명칭은 「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(1962. 4. 16. 제정)」에 의한 “월남귀순자”이고,²⁾ 이후 「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」이 제정(1978. 12. 6.)됨에 따라 “월남귀순용사”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,³⁾ 1997년 「북한이탈주민법」이 제정되면서 “귀순”의

2) 「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」 제3조(정의) ⑥ 본법에서 월남귀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
1. 북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
2. 북한괴뢰집단 및 그 소속단체의 간부로 재직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
3. 북한괴뢰집단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

3) 「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」 제2조 (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이나 기타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에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북한괴뢰집단의 군인(軍屬을 포함한다)으로서 복무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
2.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
4. 북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자수·전향한 자

개념이 “북한이탈”로 변하게 되었고, 이때부터 “북한이탈주민”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됨.⁴⁾

〈 북한이탈주민 법적명칭 연혁 〉

제정/개정/제출일	제명	명칭
1962. 4. 16. 제정	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	월남귀순자
1978. 12. 6. 제정	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	월남귀순용사
1993. 6. 11. 전부개정	귀순북한동포 보호법	귀순북한동포
1996. 11. 14. 정부제출	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	북한탈출주민
1997. 1. 13. 제정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	북한이탈주민

□ 법적 명칭이 “북한이탈주민”으로 정해진 후에도 여전히 “탈북자”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, “탈북자(脫北者)”는 “북한에서 탈출한 놈(者)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부는 2004년 9월부터 인터넷 전자공청회, 전문가회의, 토론회와 여론조사, 탈북자 여론수렴 등 총 1만 7,000여명의 국민들로부터 탈북자를 대신할 명칭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,⁵⁾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5년 ‘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’이라는 의미인 “새터민”이라는 명칭을 선정·발표함.⁶⁾

4) 정부가 제출(1996. 11. 14.)한 「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」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“북한탈출주민”이라는 용어를 “북한이탈주민”으로 변경됨

5) 관련기사: 서울신문, “[발언대] ‘새터민’ 용어선정 의미/정동문 통일부 정착지원과장”, 2005.1.21.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10&oid=081&aid=0000029151>

6) 당시 통일부는 ‘북한이탈주민’과 ‘새터민’ 명칭을 병기해서 사용하였음.
 관련기사: 세계일보, “‘탈북자’ 명칭, ‘새터민’으로 바뀐다”, 2005.1.10.

그러나 2007년 4월 10일 21개의 탈북자 단체와 500여명의 탈북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(위원장 황장엽)는 “새터민” 용어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며 통일부에 “새터민” 명칭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,⁷⁾ 이후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‘북한이탈주민’이 보편적으로 통용됨.

〈 북한이탈주민, 이북도민, 새터민의 차이 〉

구 분	정 의	법적 근거
북한이탈주민	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이북도민	①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며, 아래 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. (구)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지역인 자 2.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 3. 「북한이탈주민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.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 5.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 ② 월남(越南)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·군의 주민	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, 「이북도민의 조사·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2조
새터민	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	-

□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연혁을 살펴볼 때, 개정안과 같이

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2&aid=0000074119>

7) 관련기사: 노컷뉴스, “북한민주화위, ”새터민“ 명칭 사용중단 요청”, 2007.4.17.

<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279888>

당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통일부가 만든 “새터민”이라는 용어가 먹을 것을 찾아 새 땅을 찾는 “화전민”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탈북자들은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대한민국에 새 터를 찾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정착한 것이라고 밝힘.

그 명칭을 ‘이북민’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1997년 7월14일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25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, 정부 기념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실시 및 대국민 홍보 사업도 상당히 진행된 측면이 있으므로,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이 일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, 이와 함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여론 수렴, 유사한 명칭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북도민 단체의 의견 및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.

문 의 처
02)6788-5267